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단251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도하

변론 종결 2020. 1. 17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3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6.말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가지고 있던 C, D 명의의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고,2015. 7. 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이 사건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위수분양권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무효가 되어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F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F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며,2015. 7. 1.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에게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급부행위의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2017다37324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따라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동관